양계경리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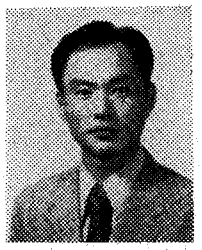

송 재 만
(소신종계원 경리계장)

일반적으로 수선비의 범위는 넓다 하겠다. 고정자산에 대한 추가 지출중 자본적 지출로서의 수선비가 아닌 지출은 모두 수익적 지출로서의 수선비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러한 수선비의 지출은 기업경영상의 문제 뿐만아니라 세무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지출된 수선비가 당해 사업년도에 있어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고정자산의 원가에 전입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그 손비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바로 세금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수선비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세법의 범정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가) 수선비와 세무처리

기업에 귀속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면에 있어서

가) 수선비

나) 임차료

다) 보험료

라) 세금 및 공과로 구분 되는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수선비의 지출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수선비는 세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가) 수익적 지출로서의 수선비

나)자본적 지출로서의 수선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그 손금성에 대한 한계를 규정짓기 위한 조처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수익적 지출로서의 수선비에 대하여는 자산의 원가에 전입하여 다시 감가 상각을 통하여 산입하게 되는 것이다.

(나) 수익적지출의 수선비

수익적 지출의 수선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명시한바와 같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복구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수선비의 지급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게되는 것이다.

※ 수익적 지출로 하는 수선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 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상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대체

바)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위의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자본적지출의 수선비

자본적 지출로서의 수선비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57조에 규정한바와 같이

1)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를 연장시키거나

2)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선비의 지급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자본적 지출로 보게되는 것이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에레베이터 또는 냉. 난방 장치의 설비

다) 빌딩등에 있어서 대피시설등의 설비

라) 재해등에 의하여 건물. 기계. 설비등이 파손 또는 마모되어 당해자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 확장. 설비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상의 설명에서의 문제점은 수선이나 계량등을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 수익적 지출로 볼 것인가.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인가 하는 구분 문제등이라 하겠다.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감가자산에 대하여 "코스트의 추가"가 수익적인가 아니면 자본적 지출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수익적 지출로서의 수선비라 하게된다면 지불 할 때 손금에 산입되나 자본적 지출로서의 수선비라 보게되면 감가상각이라는 절차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있어 손금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최소의 세금부담을 목적하는 세무경영관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면 고정자산에 관하여 보통의 관리 또는 수리를 한 경우에 그 자산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키는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과 고정자산에 관해서 보통의 관리 또는 수리를 한 경우에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게 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세무상 수리. 계량.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할지라도 그 소유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에 간단한 사례에 의하여 설명하여 보면

"모 기업은 당기에 있어서 건물에 대하여 ₩7,000,000을 지출하여 수선을 하였다.

이 건물은 5년전에 신축하였으며 그 당시에 있어서 통상의 관리또는 수선을 하여 당기에 있어서는 잔존내용 년수가 10년 가격은 ₩12,000,000으로 예측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리 또는 수선을 태만한 까닭으로 개량 직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예측된 잔존내용 연수가 8 년가격은 ₩9,000,000이다.

개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결과 그후의 내용연수는 16년 가격은 ₩15,000,000으로 되였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세무계획

1) 수선비로 지출한 ₩7,000,000중 자본적 지출이라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금액은 ₩3,000,000이며

2) 지출한 ₩7,000,000중 수익적 지출로서의 수선비 즉 속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4,000,000이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면

1)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부분에 대응할 금액의 계산

$$\text{자본적지출금액} = (\text{추가지출금액}) \times \frac{\text{지출후내용연수} - \text{지출전 잔존 내용연수}}{\text{지출후의 내용 연수}}$$

즉, $₩7,000,000 \times \frac{16년 - 10년}{16년} = 7,000,000 \times 6/16 = 2,625,000$

2) 고정자산의 가격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의 계산

자본적 지출이되는 금액, 지출직후의 가격—지출시에 예측대는 가격 즉, ₩15,000—₩12,000,000=₩3,000,000

3) 자본적지출이 되는 금액의 계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부분에 대응할 금액) ₩2,652,000

(고정자산의 가격을 증가 시키는 부분에 대응할 금액) ₩3,000,000

따라서 수선비 ₩7,000,000 ₩3,000,000 이 자본적 지출 금액이 된다.

4)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되는 금액

(수익적 지출로 되는금액)=(추가 지출금액)—(자본적 지출액)

₩7,000,000—₩3,000,000

=4,000,000

따라서 수선비 ₩7,000,000중 ₩4,000,000 이 당기에 있어서 수익적 지출의 수선비가 되는 것이다.

분개는

	차 변	대 변
수선비용	₩4,000,000	
건 물	₩3,000,000	
현금·예금		₩7,000,000

(주) 통상의 관리 또는 수선을 하지 않은 경우 잔존 내용 연수 가격의 저감은 전연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실무적인 면에서의 구분

고정자산에 대한 추가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할 것인가 수익적지출로 할 것인가의 판정은 대단히 난이한 문제라 하겠다.

그것은 어떤면에 있어서는 회계 이전의 사실인정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관한 결정적인 해결방법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를 함에 있어서 그 편의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무 경영 관리의 관점에서 수선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구분의 기준으로서 그 한 방법을 금액 기준에 의한 방법을 설명코저한다. 금액기준에 의한 구분 방식에 있어서 그 구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1건당 지출금액에 의한 구분

나) 취득 원가에 대한 금액비에 의한 구분

다) 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의한 구분

이와같은 방법은 실전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운용에 있어서도 세무당국이 이에 대한 승인에 모험도는 적다고 보겠다.

즉, 1) 일정한 금액이하의 지출은 모두 수익적 지출로서 수선비로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의 수선비.

2) 수선을 행한 자산의 취득가격이 일정한 비율이하의 지출은 모두 수익적 지출로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한다. 단 물가의 변동이 현저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가격이 아닌 싯가를 기준하여 비율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결과적으로 세법의 범주내에서 검토하여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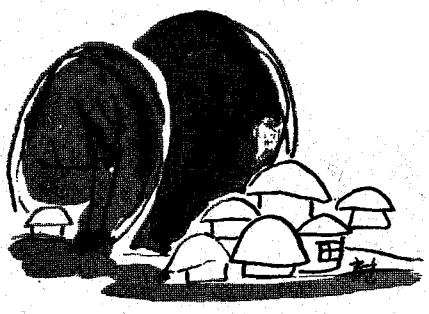
◇ ◇ ◇